

#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

## 1. 서류심사

구 분	합계	성적 및 교육사항	자격증	자기소개서 (직무수행계획서)	우대 및 가점
위촉연구원	100	30	10	6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## 2. 면접시험

구 분	합계	전문성/역량	인성/태도	우대 및 가점
점 수	100	50	5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## 3.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(공통)

구 분	일 반 자 격	배 점
위촉연구원	정보처리/컴퓨터활용능력	기사 : 3점 산업기사 : 1점
	교통/일반기계/자동차검사(정비)	1급 : 2점 2급 : 1점
	사업·운송·자가용조종사/운항관리사/교통관계사/항공정비사/ 항공기관사/교통안전관리자/ 교통사고분석사	3점
공통	한국어능력시험(KBS),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등급	1급 : 3점 2급 : 2점 3급 : 1점

※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,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

※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의 경우 1급으로 적용

## 4. 직무수행계획서 채점기준(위촉연구원)

평가기준	배 점	채 점 기 준				
		탁월	우수	보 통	미 흡	불량
해당분야 응시적정성	30	30	24	18	12	6점
해당업무 비전제시 능력	30	30	24	18	12	6점

## 5. 성적 및 교육사항 반영기준

구분	점수 부여 기준	비고
학교교육	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	최대 30점 (학교교육은 C학점 이상, 사외교육은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함)
사외교육	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	

※ 사외교육 수료증은 면접 시 확인

#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 있음  없음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  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  해당  비해당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  해당  비해당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원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(서명)

#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

한국교통안전공단 「인사규정」 상 채용결격여부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아래의 질문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후 회신해주시기 바라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취소 또는 해임요구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여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	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판단	
3-1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3-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3-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3-4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3-5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3-6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지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(crimis.police.go.kr)에서 개인의 범죄, 수사경력을 본인열람하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	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5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해당하는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하는지 -----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해당 기재사항은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료로만 활용됩니다(이외 용도 활용 불가)	

년 월 일

지원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(서명)

## <원본일 경우 신청가능>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#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